

코로나19관련 정기고사 인정점 부여 기준 및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 안내문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, 정기고사 기간 등교중지 학생 및 기타 사유 결석 학생 발생 시 인정점 부여 기준 및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를 안내드립니다.

1. 100% 인정비율 적용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처리 등	인정점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 출석인정결석 ○ 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 출석인정결석 ○ 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*	○ 출석인정결석 ○ 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○ 출석인정결석 ○ 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의심증상학생	증상 소멸 시까지*** (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·진단)	○ 출석인정결석 ○ 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***
고위험군 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 출석인정결석 ○ 별도 시험실 제공	기준점수의 100%

*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. 별도 시험실 제공

**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. 별도 시험실 미제공

***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,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과 마찬가지로 최하점의 차하점 적용

2. 80% 인정비율 적용

대상	조건	출결처리 등	인정비율**
고위험군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관심', '주의'	○ 질병결석 ○ 별도 시험실 제공	기준점수의 80%
교외체험학습* (가정학습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 출석인정결석	기준점수의 80%
기타결석 (감염 우려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 기타 결석 ○ 별도 시험실 제공	기준점수의 80%
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○ 미인정 결석	최하점의 차하점

*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

3. 기준 점수 산출 방법

- 1)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
- 2)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
 - ① 1순위: 이전 학기 내 동일교과(동일시수)의 성적
 - ② 2순위: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교과목의 성적
- 3) 2)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 점수가 없는 경우
 -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,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.

4. '평균점수 비율(전입생 제외)' 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

- 교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

$$\text{최종 인정점} = \text{기준점수} \times \frac{\text{결시고사 평균}}{\text{기준고사 평균}} \times \text{인정점 부여비율}$$

과목	기준고사(1차고사)		결시고사(2차고사)	최종 인정점
	평균	기준점수	평균	
수학	68.0	65	62.3	47.64

*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

- 1) $68.0 : 65 = 62.3 : \text{인정기준점수}$
- 2) $\text{인정기준점수} = (65 \times 62.3) / 68 = 59.55$
- 3) $\text{인정기준점수} \times 0.8(\text{병결 인정점 부여비율}) = 47.64$
- 4) $\text{최종 인정점} = 47.64$